

#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용 사건기록 심사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## 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교육용 사건기록의 연구업적인정을 위한 실질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정의)

교육용 사건기록(이하 “사건기록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실무교육과 변호사 시험 중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무교원이 작성하는 기록교재를 말한다.

## 제3조 (연구업적 인정)

- ① 대학원장은 실무교원이 작성한 사건기록을 승진/재임용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② 사건기록의 승진 /재임용 업적 인정은 실무교원 1인당 1년간 2건 이내이며, 1건당 25점으로 한다.
- ③ 1항 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인증평가에서의 업적평가는 그 기준을 준용 한다.

## 제4조 (연구업적 인정 요건)

사건기록이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첨부자료는 10개 이상일 것
2. 건당 30쪽 ~ 50쪽 내외의 분량일 것

## 제5조 (연구업적 인정 절차)

- ① 실무교원은 연구업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교무부대학원장에게 사건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교무부대학원장은 사건기록의 전문적·실질적 심사를 위하여 전공분야 및 전문적 관련성을 감안하여 교육용 사건기록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용 사건기록 심사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고 연구업적의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세칙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